

# 學會回顧

李相敦\*

## I. 學會動向

1984 年度에도 本學會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與件에도 불구하고 모든 任員과 會員이 마음을 합쳐 다음과 같은 活動을 전개하였다.

### (1) 1984 年度 總會 및 研究發表會 개최

① 日時 : 1984. 7. 21. 18:00~21:00

② 場所 : 스칸디나비아 클럽

③ 總會의 決議事項

(i) 會則改正 : 常任理事를 6 人으로 하고, 任員의 任期는 2 년으로 하며, 常任理事會의 決議는 구성원의 過半數의 찬성으로 하기로 결의.

(ii) 任員改選 : 新任會長에 徐元宇 교수(서울大), 副會長에 全昌祚 교수(東亞大)와 金伊烈 교수(中央大), 監事에 金基洙 교수(漢陽大)와 金元圭 교수(慶北大)가 선임되었으며, 한편, 常任理事로는 李尚圭 변호사, 金哲洙 교수(서울大), 吳錫洛 변호사, 具然昌 교수(慶熙大), 金亨澈 環境廳計劃調整局長, 李均成 교수(外國語大) 및 幹事로는 李相敦 교수(中央大)가 선임되었다.

④ 研究發表會 主題

(i) 具然昌, 美國 國家環境政策法의 시행과 法院의 役割

(ii) 尹瑞成, 排出賦課金制度의 運用과 그 問題點

### (2) 1984 年度 秋季 研究發表會

① 日時 : 1984. 12. 1. 15:00~18:00

\* 本學會 幹事

- ② 場所：韓國社會科學圖書館 세미나실
- ③ 研究發表會 主題
  - (i) 申鉉德, 環境問題의 制度的 接近方法
  - (ii) 朴秀赫, 獨逸의 環境保全法制

## II. 環境法學의 研究動向

### (1) 環境法研究 第5卷 發刊

本學會는 1983. 12. 20 字로 環境法研究 第5卷을 發刊하였다. 第5卷에는 特집으로 排出賦課金 制度에 관한 論文 3편을 포함한 다음의 論文이 게재되어 있다.

- ① 鄭在吉, 排出賦課金制度의 意義와 比較法의 考察
- ② 尹瑞成, 排出賦課金制度의 運用과 그 問題點
- ③ 權五乘, 排出賦課金制度와 類似한 制度
- ④ 李相敦, 海底石油開發 過程에서 발생하는 海洋污染의 法的 問題點

### (2) 會員들의 1984 年度 研究動向

- Yeon-chang Koo, "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: A Critical Evaluation of Its Legislative Scheme, Decision-Making, and Implementation" (Ph. D. dissertation, Univ. of Wisconsin/Madison, 1984).
- 具然昌, 「判例研究：公害訴訟에 있어서의 因果關係와 蓋然性立證」(大判 1984. 6. 12, 1981 다 558), 大韓辯護士協會誌 1984 年 10 月號
- 徐元宇, 環境權의 性質과 效力(서울大 法學 25 권 1 호, 1984)
- 申鉉德, 海洋污染防治에 관한 國際條約과 國內法, 國際法學會 論叢, 제 28 권
- 李相敦, 海洋環境法 序說——海洋污染의 現況과 問題點(中央大 論文集 사회과학편 제 28 집, 1984)
- 李相敦, 海洋投棄에 의한 海洋污染의 法的 規制(中央大 法學論文集 제 9 집, 1984)

- 李相敦, 油類에 의한 汚染被害을 填補하기 위한 美國의 法制(海法會誌 제 6 권, 1984)
- Sang Don Lee, Marine Environment Law in Korea,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, Vol. 11(1984)
- 李相敦, 海洋污染의 規制를 위한 現行國內法의 諸問題點(法曹 제 33 권 4~5 호, 1984. 4~5)
- 李英峻, 海洋污染防止를 위한 地域的 協力 모델로서의 Baltic 協約에 관한 考察, 國際法學會論叢, 제 26 권 2 호
- 韓昌奎, 美國의 環境訴訟法制 概觀(成大 社會科學 제 20 집, 1983)